

보호관찰 분류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초기면담과정에서 수거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잠재적인 위험유발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위험인자들에는 기존의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 역동적 위험요인을 포함시키고 재범유발 인자로서의 효력을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2004년도의 Y 지소와 C 지소의 보호관찰대상자 64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는 청소년 300명, 성인 342명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에 차이를 보인 변수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및 처분, 공범의 수, 동종전과의 유무, 벌금, 집행유예 경력, 전과, 교육연수, 학업의 안정성과 학업에 대한 태도, 동거가족 유무, 결손의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순응정도,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여부, 본 신고서 작성태도와 보호관찰관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 및 직업에 대한 신고사항 일치 여부로 나타났다.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관련 문제행동 지표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청소년들의 재범예측 변수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위반한 법령별로 보자면 사회보호법과 성폭력법을 위반한 자들이 재범관련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범 연령은 소년에서와는 달리 성인에게 있어 재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과 달리 성인들의 재범지수는 보호관찰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으며, 교육연학이나 중퇴의 경험 및 생업에 대한 태도나 안정도가 재범발생에 차이를 가져왔다. 중다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수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학업의 안정성, 교육연수,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본건 범행의 공범 수 및 집행유예 전력이었다. 성인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수들은 청소년대상자들과는 달리 보호관찰전력, 처분의 근거 법령, 신고사항 중 직업/신분의 일치여부, 신고기일 내 신고여부, 생업에 대한 태도, 가정의 결손정도, 처분의 종류 및 신고서 작성의 충실했는지였다.

주요어 : 보호관찰, 재범예측, 위험성평가, 역동적 위험요인

* 본 논문은 첫 번째 저자가 수혜한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에 의해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 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E-mail : suejung@kyonggi.ac.kr

최근 법무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 보호법 폐지 권고안에 따라 이 법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사회보호법과 관련되어 해당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의 견해는 ‘유지/개선’과 ‘즉각 폐지’로 갈려 팽팽히 대립되었다. 실무자들은 보호감호제도의 즉각 폐지가 물고 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대체법안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런 논쟁의 핵심에는 범죄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란 개념이 자리한다. 즉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이란 무엇인가’, ‘범죄위험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정의가 가능하다면, 범죄위험성을 측정·평가하는 것도 가능한가’, 나아가 ‘이렇게 측정된 범죄위험성을 근거로 하자면 재범은 예측할 수 있는가’, ‘재범예측 시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들이 이 주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고 이들의 미래 위험행동이 비교적 근접하게 예측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의 정당성은 선량한 시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대중으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 위험군이 사회로 복귀할 때 각 보호관찰소 혹은 정신보건 관련당국에 등록을 하게 하는 제도가 사회에 방면된 후에도 이런 종류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범죄자의 죄질에 대한 경중을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잠재적인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힘들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측이

현대 형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까닭은 그것이 형사정책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성에 있어 심각한 오류의 위험이 있음(Monahan, 1981, 1984, 1993, 1996)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위험성에 대한 측정과 예측은 수형자의 선별구금, 보호관찰부 형의 선고와 집행의 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 또는 각종 전환제도 등, 실제 형사절차 상의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고 있다.

보호관찰에 있어서 위험성의 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의 기회와 보호관찰 자격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관찰관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선고 전 조사 보고서(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를 완결하면, 이를 기초로 판사가 형의 기간과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자격이 있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형의 유예를 결정하게 된다. 물론,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을 준수하고 보호관찰의 조건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초범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지만 과밀수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부 강력범죄자에게까지 이 제도가 확대되기도 하여 왔다. 최근에는 수용공간의 한계로 해서 보호관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보호관찰을 받은 강력범죄자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위 ‘회전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판사 등이 최선의 보호관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 Champion, op cit., p.207

전문적인 사전 평가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보호관찰의 활용도가 확대되면 판사가 어떤 범죄자에게 자유형을 선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과 감독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지위 보호관찰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추세가 예견되고 있다(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첫째, 보호관찰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척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둘째, 물론 앞으로는 더욱 범행의 유형에 따라 특화되겠지만 위험성/필요성 측정 도구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개선될 것이다. 이들 도구는 점점 특정 유형의 범죄자와 특정유형의 문제를 표적으로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셋째, 남성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필요성 측정도구의 정비와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질 것이다. 여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위험성 평가는 주로 남성 범죄자를 위한 것이어서 남성 범죄자와는 다른 문제 등을 가진 여성 범죄자를 위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넷째, 위험성/필요성 평가 도구화는 보호관찰 조건을 더욱 제한하고 강화함으로써 범죄자의 책임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강력범죄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그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범죄자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배상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병과나 전자감시나 집중보호관찰 등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섯째, 위험성/필요성 측정도구는 더 많은 수의 범죄자 유형에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표적으로 더욱 특수화, 특정화, 전문화될 것이다. 상이한 범죄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험성 측정도구는 점점 범행유형에 따라 특수화(offense-specific)될 것이다.

결국 보다 정교한 도구가 개발됨으로써 이를 이용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훈련이 마침내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수요를 인식하여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한 분류지침을 보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죄질과 범죄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변수들 위주로 재편성하고자 한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분류지침은 98년도와 2002년도 형정원 과제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외국의 수용자 분류지침 등에 근거해보자면 본 범의 내용과 범죄경력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어 평가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들만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낼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듯이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그들의 범죄적 특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평가지침이 마련되면 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하여 재범을 예방하는데에 더 효과성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체계

보호관찰이나 교정단계에서 사용하는 분류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를 지침의 목적이 바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형사정책의 여러 단계에서 분류지침으로서 사용되는 위험성평가체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정신의학적 평가법과 통계적 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가장 전통적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정신의학적인 평가 혹은 감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판단의 과정이 상당히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현재 인격상태와 환경조건 또는 과거의 성장환경 등을 분석·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재범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네’ 아니면 ‘아니오’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방법을 흔히 전체적 평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정신의학적·직관적 예측법은 소위 말하는 직업적 전문성에 주로 의존한다. 즉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위험성 평가방법인 정신의학적 평가방안은 그 어떤 통계적·경험적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판단근거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해 다양한 의문점(e.g., Dawes, Faust, & Meehl, 1989, 1993;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2000; Grove & Meehl, 1996)이 제기되었는데, 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험성 판단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높은 수준의 가공정율을 지닌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범행 자료와 전과에 근거하는 통계적 평가법은 대개 범죄자와 비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범과 관련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체계화한 기준에 근거하

여 이루어진다. 소위 범죄예측표라고 불리우는 일정한 범인성 인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의 위험요소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낸다. 이렇게 범죄통계표에 의한 평가는 과거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잇점이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직관적인 전문성 대신에 객관적인 범죄기록에 대한 사전분석을 근거로 위험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일정한 훈련기간을 거치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재범예측에 있어 범죄통계학적인 변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예언타당도를 지닌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재차 확인된 바 있다(Hoffman, 1994; Grann, Belfrage, & Tengstrom, 2000).

하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수형자들의 특성을 평가하려는 경우, 전과의 유무나 본범의 내용 등과 같이 정적 위험요인(static risk factor)만으로 구성된 통계적인 위험요인들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역동적인 위험성 인자(dynamic risk factor)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진단이 처우의 적용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다(Andrews & Bonta, 1998; Gendreau & Ross, 1987). 이때 역동적 위험요인이라 범죄경력과 관련된 사실들 이외에 약물의 사용 여부와 약물의 종류, 고용상황, 반사회적 경향을 포함한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등 변화가 가능한 요인들을 지칭한다(Van Voorhis, Braswell, & Lester, 2000). 역동적 위험요인을 측정해내기 위하여 외국의 형사정책 분야에서는 심리평가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하게 한다든가, 평가자들을 훈련시켜 재범과 특히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알려진 정신병질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개인 내적 특질들은 정적 위험요인들만으로 재범을 예측할 때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재범위

험을 평가해준다고 알려진다.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때에 기존의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 역동적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분류나 재범예측 시 매우 유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국내 형사정책 분야에서 이 같은 역동적 위험요인을 고려하려는 시도는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적극 반영된 바 있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여러 범죄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 중 한국말로 번역된 PCL-R(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항목들이 그의 문제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반영하여 주는 도구로서 그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주었다(이수정, 김경옥, 2004). 이 같은 사실은 범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판결 전후의 여러 형사정책 단계에서 역동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재범연구와 위험요인 추출

서구에서 최근 사용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절차나 도구들에 포함된 위험요인(risk factor)들은 대부분 실증적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추출된 것들이다. 하지만 재범연구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여전히 논쟁이 많은데, 즉 재범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결국 통계적 방법을 동원하여 재범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위험요인들을 찾을 때 무엇을 종속측정치로 설정하느냐에 의해 여러 범죄유발요인들 중 유의미한 예측 변수(predictor)들의 조합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범의 발생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하는 문제는 재범유발 인자를 찾는 데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http://www>.

csom.org/pubs/recidsexof.html). 재범의 발생 시점은 (1)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검거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2)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 (3) 유죄 확정 후 구금이 되는 시점을 재범의 발생시점으로 보는 방안으로 정리된다.

이들 중 만일 첫 번째 방안을 재범 규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재범율은 아마도 가장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범죄의 발생시점을 따지자면 사실상 검거시점을 재범발생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을 택하게 되면 기소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 특히 영미법의 경우 plea bargain 등이 개입되어 재범율이 비교적 낮게 잡힐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검찰에 의한 기소 여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닌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12조 이하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도입하고 최근 구속적부심을 확대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전에 전과가 있었던 피의자들의 무죄추정권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원리원칙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소 여부를 재범 발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재범의 발생율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게 되면 흔히 재범율이 가장 낮게 책정될 듯하다. 하지만 영미법의 경우 선도조건부 가석방 시 규율 위반으로 재수감되는 사례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준 역시 꼭 순수 재범이라고 보기是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데에는 국내든 국외든 변호인의 적극적인 역할 여부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시설수용이 된다는 것이 재범의 발생과 동일한 조건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각 부

처가 서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 검찰, 교정을 오가면서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만의 재범 여부를 일차적인 준거지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본 연구는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지침을 제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기존에 보호관찰 분류지침이라 하여 시행되던 것이 있었다. 1999년도 법무부용역과제(형사정책연구원, 1999)에 의해 산출된 분류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지침이 재범의 예측에 별반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위험성 평가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 방안을 제작하기에 앞서 일단 초기면담과정에서 수거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유발 인자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때 위험유발 인자들에는 기존의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 역동적 위험요인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재범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면담과정에서 수거되는 자료들과 보호관찰 중 발생하는 재범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재범 연구들에서 재범발생을 관찰하는 기간은 약 5년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ttp://www.csom.org/pubs/recidsex_of.html). 하지만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재범은 5년씩 관찰기간을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종단 연구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느냐 아니냐를 관찰하기보다는 제한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를 만한 문제행동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 예컨대 1차 심사 이후 심사결과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재분류에 의해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던가, 보호관찰 기간 중 문제를 일으켜 소환장을 발부받거나 경고장을 발부받았던가, 나아가 구인장을 받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처분을 변경 받는 등 다시 문제를 일으킨 모든 객관적인 지표를 다함께 종합하여 재범에 대한 준거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섯 가지 지표들을 모두 준거지표에 포함시켰다. 즉 보호관찰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일으킬 것이기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의 의미를 모두 준거지표의 설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재범 예측변수 선정을 위해 수행하게 될 본 연구의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가능한 탐색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특히 유의도 수준을 .10으로 잡음으로써 일종오류를 관대하게 허용함으로써 재범예측에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방법

참가자

자료는 지난 2004년도 Y지소와 C지소의 보호관찰 대상자 642명의 것들이었다. 이중에 소년은 총 300명(46.7%)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인은 342명(53.3%)이 있었다.

소년범들 중 소년법 위반자들은 250명, 선도 위탁은 37명, 형법이나 성폭력법 위반은 13명이었다. 성인의 경우 선도위탁 대상은 9명, 사회보호법 위반은 24명, 형법이나 성폭력법 위반은 286명, 가정폭력법 위반은 23명이었다. 이들을 죄명별로 분석해보면 소년범들 중 강도는 10명, 교통사범은 33명, 사기, 10명, 성폭력 13명, 절도 112명, 성보호법 위반은 5명, 폭력사범은 110명, 그리고 기타 5명이었다. 성인 응답자들의 죄명 별 분포는 강도 9명, 협박 2명, 교통사범 74명, 환경사범 4명, 사기 30명, 성폭력법 11명, 약물사범 20명, 절도 67명, 성보호법 위반 2명 폭력사범 65명, 그리고 기타 57명이었다.

보호관찰 초기면담에 포함되었던 위험유발인자

신상정보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처분의 종류,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병과여부가 포함되었다. 범행사항으로는 공범의 수를, 범죄 전력으로는 본건과 동종 전과의 수, 보호관찰 전력, 별금형 이하의 전력, 집행유예의 전력, 전과의 전력을 변수로 하였다. 학업사항으로는 교육연수, 학업중퇴여부, 학업안정성, 학업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하였다. 단, 성인의 경우에는 생업안정성, 생업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하였다.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동거가족의 유무, 가정기능의 결손정도, 보호자의 양육태도, 보호자 지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순응정도를 조사하였다. 단 성인의 경우에는 양육태도와 지도에 대한 순응정도는 조사되지 않았다. 대상자의 태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정도,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만족정도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보호관찰의 수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기일

내 신고여부와 법원에서 교부한 안내문의 지참여부,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를 변수로 하였고, 생활환경에 포함된 변수로는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 여부와 대상자 주거 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로는 주거지와 신분사항 및 전과의 실제와 자기기록이 일치하는가를 변수로 정하였다(표 1).

재범발생 여부

재범발생 여부와 관련지어 수거된 자료는 총 여섯 가지가 있었다. 우선 1차 분류심사 이후 심사결과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재분류되어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었다던가, 보호관찰 기간 중 문제를 일으켜 소환장을 발부받거나 경고장을 발부받았던가, 나아가 구인장을 받고 재범을 저지르거나 처분을 변경 받는 등 다시 문제를 일으킨 모든 객관적인 지표를 다함께 재범에 대한 준거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섯 가지 지표들에 대한 위반사항에 각기 1점을 주고, 합산한 점수를 재범지수라 명명하여 준거지표로 삼았다(표 1).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근거가 되는 법령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표 1. 보호관찰소 조사자료 내역

연번(id)	
신상	기관: 보호관찰소
정보	담당: 분류담당 직원
범행	법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사항	처분: 처분의 종류
	병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병과여부
	성별
	나이
범행	죄명: 본 건의 죄명(사범)
사항	공범: 본 건 범행의 공범 수
	최초: 최초 비행(범행) 나이
	간격: 최초비행나이(c1)와 현재 나이의 차이
	동종: 본건과 동종의 전과의 수
범죄	관찰: 보호관찰 전력
전력	벌금: 벌금형 이하의 전력
	집유: 집행유예의 전력
	구금: 징역형 및 소년원 수용 처분 포함
	전과: 전과(벌금형+집행유예+구금형)의 합계
직업	
학업/	교육: 교육 연수
생업	중퇴: 중퇴의 여부
사항	취업: 지난 1년간 취업한 개월수
	결석: 전 학년 또는 현 학년 결석일수
	생안: 생업(학업)의 안정성
	생태: 생업(학업)에 대한 태도
	동가: 동거 가족의 유무
가정환경/	결손: 가정기능의 결손 정도
양육태도	양육: 보호자의 양육태도
	순응: 보호자의 지도에 대한 순응정도
반사회적	책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태도	만족: 본 건 처분에 대한 수용정도
	신고: 신고기일(10일)내에 신고 여부
처분수용	지참: 신고 시 안내문(법원교부)의 지참 여부
정도	작성: 신고서 작성의 충실휠
	답변: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생활	기초: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 여부
환경	주거: 대상자 주거주변 환경
교우	교제: 교제중인 자 중 범죄경력을 가진 자의 수
관계	
신고사항	거일: 신고-실제 주거지 일치 여부
일치여부	직일: 신고-실제 직업/신분사항 일치 여부
	범일: 신고-전과조회 상 일치 여부
재범관련	재분류
	출석요구: 소환장 발부 횟수
	경고: 경고장 발부 횟수
지표	구인장: 구인장 신청
	재범
	처분변경: 규칙 위반으로 보호관찰 변경/취소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자료분석

본 결과분석에는 먼저 300명의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만을 포함시켰다. 우선 기준에 사용하던 분류지침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도와 2002년도에 이루어진 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라 칭함)의 연구결과 산출된 분류지침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지표였던 재범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가 예시하듯이 형정원에서 제안된 분류지침의 재범예측력은 현재 보호관찰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지침보다 예측력 면에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험도 평가기준도 사실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5% 남짓하므로 보다 더 우수한 설명력을 지닐 수 있는 위험평가 기준을 탐색할 목적으로 추가로 분석이 실시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칠 변수들과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청소년들의 신상정보, 범행사항, 학업사항,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 청소년들의 태도, 보호관찰의 수용정도, 생활환경,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수들과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통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고자 한다. 먼

표 2. 재범지수와 현재 사용 중인 위험평가지표 간 상관계수 (N=300)

	재범지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	.074
2004년도 보호관찰 자체기준	.262**
** $p < .01$	

표 3.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수별 재범지수의 평균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처분근거	소년법	250	.48(1.09) ^a	교육연수	초졸 이하	5	.80(1.30) ^a
	형법	11	1.09(1.51) ^b		중졸 이하	101	.67(1.19) ^a
	법령	2	.00(.00) ^a		고졸 이하	168	.32(.90) ^b
	선도위탁	37	.16(.69) ^a		대학 이상	23	.22(.52) ^b
처분의	선도위탁	36	.16(.69)	학교중퇴	해당 없음	267	.44(1.07)
	2호처분	160	.93(.93)		중학 중퇴	12	1.08(1.16)
	3호처분	89	1.29(1.29)		고등 중퇴	11	.38(.92)
	종류	가퇴원	1		무단결석	146	.57(1.19) ^a
병과	집행유예	11	1.51(1.09)	여부	일주일이하	77	.16(.74) ^b
	가석방	2	.00(.00)		일주일이상	77	.29(.63) ^{ab}
	병과 없음	173	.50(1.14)		학업안정	54	.05(.23) ^a
	사회봉사	45	.58(1.16)		보통	163	.42(1.08) ^{ab}
성별	수강명령	60	.20(.75)		정도	76	.82(1.25) ^b
	사회+수강	22	.64(1.00)	학업태도	양호	52	.06(.24) ^a
	남	268	.46(1.08)		보통	185	.41(1.05) ^{ab}
	여	32	.50(1.02)		불량	62	.97(1.36) ^b
죄명	강도	10	.70(.95)	결손정도	동거가족 유	290	.47(1.08)
	교통	33	.18(.46)		동거가족 무	8	.25(.71)
	기타	5	.00(.00)		가족의	88	.36(.98) ^a
	사기	10	.40(.70)		결손정도	155	.39(.08) ^{ab}
공범수	성폭력	13	.08(.28)		집합	55	.84(.18) ^b
	절도	112	.60(1.20)	부모양육	민주형	119	.24(.82) ^a
	성보호	5	.40(.89)		통제형	63	.71(1.36) ^b
	폭력	110	.27(.93)		방임형	113	.55(1.09) ^a
동종전과	0명	78	.59(1.19)	순용정도	양호	51	.14(.60) ^a
	1~4명	151	.51(1.14)		보통	205	.44(1.08) ^{ab}
	5명 이상	71	.21(.70)		불량	39	1.00(1.34) ^b
	없음	245	.35(.96) ^a		높음	27	.00(.00) ^a
경험	1~2회	39	.82(1.36) ^b	책임수용	보통	226	.40(1.02) ^a
	3회 이상	16	1.38(.38) ^c		불량	47	1.02(1.36) ^b
보호관찰	0회	247	.37(1.05)		수용적	57	.28(.94)
	1회	39	.74(1.14)		보통	235	.49(1.09)
	2회	12	.75(1.22)		부정적(불만)	8	.88(1.25)
	3회	2	1.00(1.41)	만족정도	신고태도	12	.92(1.17)
별금경험	없음	217	.42(1.02)		신고했음	288	.44(1.06)
	1회	42	.17(.54)		신고 않았음	73	.58(1.11)
	2회	17	.82(1.33)		안내문	227	.43(1.06)
	3회	13	1.46(1.76)		지참여부	47	.11(.60)
집행유예	4회 이상	11	.78(1.56)	작성태도	보통	236	.53(1.14)
	0회	294	.46(1.05) ^a		불량	13	.54(1.05)
	1회	5	.70(1.79) ^a		양호	55	.11(.60)
	2회	1	3.00 ^b		답변태도	226	.54(1.13)
전과경험	없음	204	.47(1.01) ^a		불량	13	.85(1.41)
	1회	53	.21(.72) ^a		기초생활	280	.45(1.06)
	2회 이상	24	1.08(1.64) ^b		대상 여부	20	.55(1.28)
	주택지역	287	.47(1.09)		신분일치	295	.44(1.07)
주거지역	상가지역	5	.00		여부	5	1.40(1.34)
	유해지역	1	2.00	전과일치	일치	293	.45(1.06)
주거일치	일치	290	.44(1.05)		여부	7	.71(1.50)
	불일치	10	1.00(1.49)		전체	300	.46(1.07)

* a, b, c 등 첨자가 다른 것은 각 변수 내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표 3).

청소년들의 신상정보와 재범지수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라 재범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의 재범지수 점수를 살펴본 결과, 소년법(250명), 성폭력법(2명), 선도위탁(37명)에 의해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1미만이었고 형법(11명)에 의해 처분은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1이상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296)=2.42, p<.10$. 사후검증 결과, 선도위탁이 처분의 근거였던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점수가 형법에 의해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비교했을 때, 3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는 1 이상으로, 선도위탁, 2호 처분, 가퇴원, 가석방을 선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F(5,294)=3.54, p<.01$.

청소년들이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경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동시에 처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가장 높았고,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청소년들과 병과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재범지수보다 낮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범행사항과 재범지수

청소년들의 범행사항에 관한 분석결과, 죄명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범행을 하였을 당

시 공범수에 따른 비교에서는 공범이 없었을 때 재범지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59였고, 다음으로 공범이 4명 이하인 경우 .51, 공범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낮아져 .21이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97)=2.69, p<.10$.

범죄전력과 재범지수

청소년들의 범죄전력과 관련해서, 먼저 본 건과의 동종의 전과경험에 따라 비교했을 때,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245명)의 재범지수의 평균이 가장 낮은 .35이었고, 1-2회인 경우(39명)에는 .82, 그리고 3회 이상인 경우(16명)가 1.38로 가장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97)=10.11, p<.001$. 사후검사결과, 동종전과가 없는 청소년들이 동종전과가 있는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보호관찰전력에 따라서는 보호관찰을 이전에는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247명)의 재범지수 평균은 .37이었고, 1회(39명) 혹은 2회(12명)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들은 각각 .74과 .75였으며, 3회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들(2명)은 1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벌금경험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들(217명)의 재범지수 평균은 .42로 가장 낮았고, 3회(13명) 부과 받은 청소년들은 평균 1.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5, 294)=3.76, p<.01$. 사후검증결과 이것은 3회 벌금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이 0회 그리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년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50미만이었고, 1회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70이었으며, 2회 집행 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97)=3.14, p<.05$. 이것은 집행유예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점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청소년들의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해석에는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과경험도 전체 300명중 204명이 전과를 받지 않았고 이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47, 1회 전과가 있는 경우는 .21로, 전과 경력이 2회 이상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이었던 1.08 보다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78)=6.05, p<.01$. 사후검증결과, 2회 이상의 전과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전과 경험이 없거나 1회 있는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업사항과 재범지수

청소년들의 학업사항에 관련된 변수의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연수를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재범지수의 평균이 감소되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93)=3.00, p<.05$. 사후검증결과, 중졸이하의 교육연수를 지닌 청소년들이 중졸이상의 교육연수를 지닌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 상에서 더 불량한 결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교중퇴여부에 따라서는 중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1.08로 가장 높았으며, 퇴학

경험이 없거나 고등학교 중퇴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은 .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기간을 없음, 일주일, 일주일 이상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무단결석 기간에 따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단결석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오히려 일주일 정도 무단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보다 재범지수 상에서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안정정도를 3단계 즉, 양호 보통, 불량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성적이 불량할수록 재범지수의 평균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90)=8.73, p<.001$. 사후검증결과, 이것은 성적이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점수가 양호한 청소년들과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학업태도를 학업안정정도와 같이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이 역시 학업태도가 불량할수록 재범지수의 평균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96)=11.64, p<.001$. 사후검사결과, 학업태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정환경과 재범지수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의 분석 결과, 먼저 가족이 있고 없음에 따른 차이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빈도가 편중됨을 유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결손정도별로는 결손정도가 낮거나 보통인 청소년들의 평균은 .40보다 낮은 반면, 결손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점수의 평균은 .84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95)=4.18, p<.05$. 사후검사결과, 결손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점수가 결손정도가 낮거나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 별로는 민주형 부모의 자녀가 .24로 가장 낮았고, 방임형 부모의 자녀는 .55이었으며, 부모의 자녀양육 유형이 통제형인 청소년들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2, 292)=4.68, p<.05$. 사후검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형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통제형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청소년들의 보호자 지도에 대한 순응정도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순응정도가 불량할수록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F(2, 292)=7.59, p<.001$. 사후검사 결과, 부모에 대한 순응 정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이, 양호하거나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태도와 재범지수

대상자의 태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와 쳐분에 대한 수용정도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평가를 사용하였다. 먼저 보호관찰관이 평가한 청소년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정도에 따른 비교에서는 책임수용 정도가 불량할수록 재범지수는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F(2, 297)=9.89, p<.001$. 사후검사 결과, 책임수용태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책임

수용태도가 높거나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정도를 수용적, 보통, 불만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을 때 역시 쳐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수록 재범지수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의 수용정도와 재범지수

보호관찰을 신고기일 내에 신고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른 재범지수는 기일 내 신고한 청소년들이 신고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수용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를 방문할 때 법원에서 교부한 안내문 지침 여부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는 신고서를 지참한 청소년들이 지참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신고서 작성태도는 양호, 보통, 불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작성태도가 양호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에 따른 비교에서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답변태도가 불량할수록 재범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F(2, 291)=4.38, p<.05$.

생활환경과 재범지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재범지수 평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청소년들의 주거지역을 주택지역, 상가지역, 유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역시 재범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신고사항의 일치여부와 재범지수

재범지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로는 주거지의 일치 여부, 신분사항의 일치 여부, 전과조회 상의 일치 여부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먼저 청소년들이 신고서에 작성된 주소와 실제 주소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주소를 일치하지 않게 신고서에 작성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신고서에 작성한 신분의 일치여부에 따라서는 일치한 청소년들보다 일치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298) = -1.990, p < .05$. 신고서에 작성한 전과기록의 일치 여부 역시 일치하게 기록한 청소년들(45)보다 일치하지 않게 기록한 청소년들(71)이 더 높았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재범지수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재범지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본건과 동종의 전과 수, 보호관찰전력, 벌금형이하의 전력, 교육연수, 생업안정성 정도, 생업에 대한 태도, 동거가족, 가정기능의 결손 정도, 보호자의 양육

가정의 결손정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및 신고사항 중 실제 직업/신분사항의 일치 여부였다(표 4).

즉, 본건과 동종의 전과 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전력이 많을수록, 벌금형이하의 전력이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생업안정성 정도가 불량할수록, 생업에 대한 태도 역시 불량할수록, 가정의 결손 정도가 심할수록,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와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 및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가 불량할수록, 그리고 신고사항 중 실제 직업/신분사항의 일치하지 않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재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재범지수와 상관이 있는 변인들 중 어떤 것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재범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처분의 종류, 병과, 공범의 수, 본건과 동종의 전과의 수, 범죄전력, 교육연수, 생업의 안정성, 생업에 대한 태도, 동거가족, 가정기능의 결손 정도, 보호자의 양육

표 4. 청소년대상자들의 재범지수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동	보	별	집	행	교	학	학	동	가	지	책	처	신	안	신	답	생	주	직	전	
성	연	연	종	관	금	유	유	업	업	결	도	임	분	신	내	고	지	서	변	보	거	업
령	전	전	전	형	유	유	연	안	업	순	수	수	고	지	지	서	변	충	태	호	일	일
과	전	전	전	력	수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력	력	력	력	력	성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재범지수	.01	-.07	.26**	.12*	.13*	.11*		-.19*														

* $p < .05$, ** $p < .01$

표 5. 재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변인	β	R^2	adjusted R^2	R^2 change	t
책임수용정도	.156	.075	.071		2.380*
학업안정성	.126	.108	.101	.030	2.038*
교육연수	-.197	.133	.123	.022	-3.287**
동종전과 수	.098	.152	.138	.015	1.561
답변태도	.128	.162	.145	.007	2.009*
공범의 수	-.117	.174	.154	.009	-1.913†
집행유예전력	.105	.184	.161	.007	1.767†

* $p<.10$, * $p<.05$, ** $p<.01$

태도, 보호자의 지도에 대한 순응 정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본건 처분에 대한 수용 정도,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 생활환경,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예측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처분의 종류, 병과,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등은 더미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 예비연구이므로 단계별 기준을 entry .10, removal .20 수준에서 F 화률을 적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학업의 안정성, 교육연수,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본건 범행의 공범 수 및 집행유예 전력이었다, $R^2=.16$, $F(7, 249)=5.010$, $p <.001$. 즉,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가 불량할수록, 학업의 안정성이 불량할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가 불량할수록, 공범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집행유예 전력이 많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이중 공범의 수는 변량분석 결과와 불일치하였는데 이는 공범의 수가 아주 많은 경우 특히 상황적 촉진요인이 범죄의 개

입에 더 영향을 주기 때문인 듯 하였다.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자료분석

본 결과분석에는 나머지 342명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포함되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분류지침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9년도와 2002년도에 이루어진 형정원 연구 결과 산출된 분류지침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지표였던 재범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표 6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가 예시하듯이 형정원에서 제안된 분류지침의 재범예측력은 현재 보호관찰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지침보다 예측력 면에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관련성은

표 6. 재범지수와 현재 사용 중인 위험평가지표 간 상관계수 (N=342)

	재범지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	.044
2004년도 보호관찰 자체기준	.134*

* $p<.05$

청소년들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보호관찰자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예측치들이 될만한 변수들과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신상정보, 범행사항, 학력 및 생업, 가정환경, 청소년들의 태도,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 생활환경, 신고사항의 일치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변수들과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통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고자 하였다. 다음에는 성인자료의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표 7).

성인대상자들의 신상정보와 재범지수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라 살펴본 결과, 처분의 근거에 따른 재범지수에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F(4, 337)=4.778, p<.001$, 사후 검증 결과, 성폭력법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형법이나 선도위탁 및 가정폭력법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회보호법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형법에 따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성폭력법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사례수가 너무 적으므로 해석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처분의 종류별로는 가출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 평균이 .79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대상 순이었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4, 337)=3.523, p<.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가출소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만이 가석방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병과(사회봉사수강명령의 병과여부)에 따라 비교했을 때, 병과가 없는 대상자들의 재범지

수의 평균은 .36,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의 평균은 .25, 수강명령만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의 평균은 .3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의 평균은 .06이었으나, 이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범행사항과 재범지수

청소년들의 본범 내용별 재범지수 상의 차이와는 달리 성인들에게 있어 본범의 내용은 재범지수 상에서 유의한 차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 340)=3.779, p<.001$. 하지만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2명의 말썽에 의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범행 당시 공범의 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공범이 1명에서 4명까지 있는 경우의 재범지수가 공범이 없는 단독 범일 경우나 공범이 5명 이상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보다 더 높은 재범지수를 보고하였다, $F(2, 339)=2.431, p<.10$.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최초 범행연령에 따라서는 18세 이전에 최초 범행을 저지른 대상자들이 18세 이후에 최초 범행을 저지른 대상자들보다 재범지수가 더 높았으며, 이들 간의 재범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302)=2.508, p<.05$.

범죄전력과 재범지수

동종전과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동종 전과가 많은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 전력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보호관찰 전력이 많을수록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더 높았다, $F(2,338)=7.964, p<.001$. 사후검증 결과, 보호관찰 전력

표 7. 성인대상자들의 변수별 재범지수평균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법령	사회보호법	24	.79(1.53) ^b	교육연수	초졸 이하	57	.40(1.07)
	형법	284	.23(.77) ^c		중졸 이하	86	.38(1.10)
	성폭력법	2	2.00(.00) ^a		고졸 이하	143	.20(.66)
	선도위탁	9	.00(.00) ^c		대졸 이상	30	.13(.43)
처분의 종류	가정폭력법	23	.26(.86) ^c	중퇴경험	해당 없음	289	.23(.69)
	선도위탁	9	.00(.00) ^b		초등 중퇴	3	.67(1.15)
	집행유예	233	.29(.86) ^b		중등 중퇴	30	.27(.94)
	가석방	53	.04(.19) ^b	최근 취업개월수	고등 중퇴	20	.25(.72)
	가출소	24	.79(1.53) ^a		미취업 중	96	.26(.82)
병과	가정보호	23	.26(.86) ^b	취업개월수	6개월 이하	120	.18(.53)
	병과 없음	173	.31(.94)		6개월 이상	108	.21(.71)
	사회봉사명령	126	.25(.76)	생업안정 정도	양호	26	.15(.46) ^{ab}
	수강명령	27	.33(1.00)		보통	178	.19(.65) ^a
죄명	가정보호	21	.06(.25)		정도	138	.42(1.11) ^b
	강도	9	.22(.44)	생업에 대한태도	양호	48	.13(.39) ^a
	협박	2	.50(.71)		보통	222	.22(.74) ^a
	교통	74	.11(.35)		불량	68	.59(1.31) ^b
	기타	57	.09(.29)	동거가족	있음	281	.24(.76)
	환경	4	.00(.00)		없음	61	.48(14.22)
	사기	30	.43(.97)		낮음	86	.30(.90)
	성폭력	11	.36(.67)	결손정도	보통	196	.23(.05)
	약물	20	.25(.64)		심함	58	.41(1.16)
	절도	67	.45(1.10)		높음	29	.17(.47) ^a
공범의 수	성보호	2	2.50(3.54)	책임수용 태도	보통	250	.22(.74) ^a
	폭력	65	.12(.41)		불량	63	.54(1.29) ^b
	0명	277	.24(.81) ^a		수용적	52	.15(.41) ^a
	1-4명	57	.49(1.10) ^b		보통	249	.25(.81) ^a
	5명 이상	8	0.00 ^a	만족정도	부정적(불만)	41	.61(1.36) ^b
범행연령	최초	18세 이전	.52		신고여부	신고했음	.77(1.42)
	18세 이후	252	.21(.75)		신고 않았음	316	.24(.79)
	동종전과	없음	.23(.79)	신고서 작성태도	높음	47	.23(.73)
회수	1-2회	78	.22(.77)		보통	254	.25(.81)
	3회 이상	90	.42(1.05)		불량	41	.49(1.23)
보호관찰 전력	없음	277	.21(.73) ^a	답변태도	양호	56	.21(.68) ^a
	1회	52	.48(1.13) ^b		보통	270	.24(.79) ^a
	2회	12	1.08(1.62) ^c		불량	15	1.20(1.82) ^b
별금 경험	없음	120	.28(.90)	기초생활 대상자 여부	기초생활 대상자	17	.00(.00) ^a
	1회	68	.18(.67)		대상자 아님	325	.29(.88) ^b
	2회	45	.36(.93)		주택지역	314	.28(.88)
	3회 이상	109	.26(.70)		주거지역	8	.38(.74)
집행유예 경험	없음	194	.22(.72)		유해지역	.	.
	1회	100	.21(.62)		주거일치	일치	.27(.86)
	2회	35	.31(.83)		여부	불일치	.46(.97)
	3회 이상	13	.46(1.13)	신분일치여부	일치	331	.24(.81)
구금 경험	없음	285	.24(.78) ^a		불일치	11	1.27(1.62)
	1회	21	.33(.91) ^{ab}	전과일치여부	일치	304	.28(.85)
	2회 이상	29	.66(1.42) ^b		불일치	38	.26(.95)
전과 경험	없음	89	.15(.51)	전체		342	.28(.86)
	1회	52	.40(1.10)				
	2회 이상	157	.34(.97)				

* a, b, c 등 첨자가 다른 것은 각 변수 내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이 2회 있는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전력이 없거나 1회 있는 사람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았으며 1회 있는 대상자와 전력이 없는 대상자들 간 재범지수 상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별금경험에 따라서는 별금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의 재범지수의 평균은 .28이었고, 별금경험이 있는 대상자들도 대부분의 경우 재범지수의 평균은 .5보다 낮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행유예 전력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집행유예 전력이 4회 있는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구금 전력에 따른 재범지수는 구금전력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332)=3.112, p<.05$.

마지막으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전과 전력에 따라서는 전과 전력이 1회 있는 대상자들이 전과 전력이 없거나 2회 이상인 경우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295)=1.894, ns$. 이는 구금이 아닌 보호처분까지를 포함하는 단순한 의미의 전과횟수는 재범예측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학력 및 생업과 재범지수

먼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학력에 따라 비교한 결과,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으나, 이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3,312)=1.471, ns$. 또한,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학교 중퇴경험에 따른 재범지수 상의 차이와 최근 취업한 기간에 따른 재범지수 상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생업안정성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는 생업

이 안정되지 못할수록 재범지수가 높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339)=3.228, p<.05$. 사후검증을 한 결과, 생업안정 정도가 보통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불량한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생업에 대한 태도 역시 생업태도가 좋지 않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335)=5.764, p<.01$. 사후검증을 한 결과, 생업에 대한 태도가 양호한 대상자들과 불량한 대상자들과의 차이 및 보통인 대상자와 불량한 대상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환경과 재범지수

먼저 동거가족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는 동거가족이 없는 대상자들이 동거가족이 있는 대상자들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결손 정도 역시 결손 정도가 심한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인의 경우 결손 정도가 심한 대상자들의 변이성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다.

대상자들의 태도와 재범지수

먼저 보호관찰관이 평가한 대상자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에 따라 재범지수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 책임수용 정도가 불량할수록 재범지수의 평균이 높았다, $F(2,339)=2.683, p<.05$. 사후검사 결과, 책임에 대한 수용태도가 불량한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수용태도가 보통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처분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른 비교에서도 처분에 불만이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았다,

$F(2,339)=2.762, p<.05$. 사후분석 결과, 처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대상자들의 평균이 처분을 수용하거나 처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보호관찰의 수용정도와 재범지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보호관찰을 신고 기일 내에 신고한 대상자들이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재범지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339)=1.88, p<.10$.

성인 대상자들의 신고서 작성태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을수록 재범지수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답변태도가 불량할수록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2,338)=9.435, p<.001$. 사후검사 결과, 불량하게 답변한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보통이거나 양호한 대상자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생활환경과 재범지수

성인 대상자들의 생활환경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보다 높았다, $t(340)=5.984, p<.001$.

성인 대상자들의 주거지역을 주택지역, 상가지역, 유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주택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상가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보다 재범지수는 약간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신고사항의 일치여부와 재범지수

먼저 성인 대상자들이 신고서에 작성한 주소와 실제 주소간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는 주소를 일치하지 않게 신고서에 작성한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재범지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신고서에 작성한 직업이 실제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비교에서는 신고서에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성인 대상자들의 재범지수가 일치하게 기록한 재범지수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t(340)=-2.098, p<.10$. 성인 대상자들이 신고서에 작성한 전과기록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성인들의 재범지수와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인들의 재범지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본건과 동종의 전과 수, 보호관찰 전력, 교육연수, 생업안정성 정도, 생업에 대한 태도, 동거가족 유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본건 처분의 수용 정도, 신고기일 내에 신고 여부, 신고 시 안내문 지참 여부 및 신고사항 중 실제 직업/신분사항의 일치여부였다(표 8). 즉, 본건과 동종의 전과 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전력이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생업안정성 정도가 불량할수록, 생업에 대한 태도 역시 불량할수록, 동거가족이 없을수록,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가 불량할수록, 신고기일 내에 신고를 하였을수록, 신고 시에 안내문을 지참하였을수록, 그리고 신고사항 중 실제 직업/신분사항의 일치하지 않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표 8. 성인대상자들의 재범지수와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성	연령	동종전과	보호관찰전력	별금형전력	집행유예전력	생업안정성	생업태도	동거가족유무	가정결손정도	책임수용정도	처분수용정도	신고여부	안내지참여부	신고서충실통	답변태도	생활보호대상	직업일치	주거일치	전과일치	
재범 지수	.01	-.07	.12*	.12*	-.06	.11	-.15*	.13*	.17**	.11*	.03	.13*	.13*	-.16**	-.11*	.07	.02	-.07	.04	.21** -.01

* $p < .05$, ** $p < .01$

재법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재범지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들 중 어떤 것이 성인들의 재범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재범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별, 나이, 한태도, 동거가족, 가정기능의 결손 정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본건 처분에 대한 수용정도,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 생활환경,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를 예측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자료

와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보호자의 지도에 대한 순응정도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처분의 종류, 병과 및 신고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더미코딩을 하여 분석하였으며, 단계별 기준을 entry .10, removal .20 수준에서 F획률을 이용하였다.

성인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수들은 보호관찰 전력, 처분의 근거 법령, 신고사항 중 직업/신분의 일치여부, 신고기일 내 신고여부, 생업에 대한 태도, 가정의 결손

표 9. 재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

예언변인	β	R^2	adjusted R^2	R^2 change	t
보호관찰전력	.277	.083	.079		4.941***
처분근거 법령	.243	.129	.123	.044	4.348***
신고직업일치	.157	.164	.154	.031	2.745**
신고기일내 신고	-.193	.188	.175	.021	-3.314**
생업에 대한 태도	.152	.201	.185	.010	2.428*
가정결손정도	-.166	.217	.198	.013	-2.691**
처분의 종류	.143	.232	.211	.013	2.385*
신고서 충실통도	.103	.241	.217	.006	-1.706†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정도, 처분의 종류 및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였다, $R^2=0.217, F(8, 246)=9.786, p<.001$. 즉, 보호관찰 전력이 많을수록, 신고사항 중 직업/신분사항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신고기일 내 신고하였을수록, 생업에 대한 태도가 불량할수록, 신고서 작성이 양호할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 및 처분의 종류에 따라 재범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결론 및 논의

보호관찰청소년들 및 성인들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신상정보, 범행사항, 범죄전력, 학업태도,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 대상자의 태도,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 생활환경,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에 따른 재범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신상정보로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처분의 종류,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병과 여부를 변수로 하였으며, 범행사항으로는 공범의 수를 변수로 하였다. 범죄전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동종의 전과의 수, 보호관찰 전력, 벌금형 이하의 전력, 집행유예의 전력, 전과의 전력을 변수로 하였고, 학업사항으로는 교육연수, 학업중퇴 여부, 학업안정성, 학업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하였다.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동거가족의 유무, 가정기능의 결손 정도, 보호자의 양육태도, 보호자 지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순응 정도였으며, 대상자의 태도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만족 정도를 변수로 포함시켰다.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고기일

내 신고 여부와 법원에서 교부한 안내문의 지참 여부,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를 변수로 하였고, 생활환경에 포함된 변수로는 기초수급 생활보호 여부와 대상자 주거 주변 환경을 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사항의 일치 여부로는 주거지와 신분사항, 전과가 실제와 자기기록이 일치하는가를 변수로 하였다. 보호관찰성인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지도에 대한 순응 정도가 빠졌고, 학업안정성과 학업에 대한 태도를 생업안정성과 생업에 대한 태도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위와 같은 변수들과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신상정보와 관련된 변수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및 처분의 종류로 나타났다. 처분의 근거 중 특히 형법에 의해 판결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 재범지수가 선도위탁에 의해 처분 받은 청소년들보다 높았으며, 처분의 종류도 3호 처분 혹은 집행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 재범지수가 선도위탁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병과 여부나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범 수와 재범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단독범행이거나 5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한 명에서 네 명 정도의 공범과 함께 범행을 시도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 전력은 재범지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전력 중 동종 전

과의 경험, 벌금 경험, 집행유예 경험, 전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호관찰 전력에 따른 재범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사항과 재범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사항 중 특히 교육연수, 학업안정성, 학업태도는 재범지수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의 안정 정도와 태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양호하거나 보통인 청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다닌 청소년들보다 재범지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교 중퇴 여부에 따른 재범지수 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의 재범지수가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결손 정도가 심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결손정도가 낮거나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통제형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민주형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대한 순응 정도가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상자의 태도 중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와 재범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이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보통이거나 높은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처분에 대한 만족 정도와 재범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보호관찰의 수용 정도를 평가하기위

해서 본 신고서 작성태도와 보호관찰관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는 재범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신고서 작성태도와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가 보통인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는 양호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양호한 청소년들과 불량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안내문 지침 여부 및 정한 기일 내 신고하는 태도와 재범지수와의 관련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여덟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재범관계를 보기위하여 기초생활 수급 대상 여부 및 주거지역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변수들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신고사항 일치 여부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직업만이 재범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항에 직업을 정확하게 기록한 청소년들의 재범지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것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주거일치나 전파일치에 따른 재범지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열 번째, 재범지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들 중 어떤 것이 재범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인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의 정도, 학업의 안정성, 교육연수,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 본건 범행의 공범 수 및 집행유예전력이었다. 즉,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수용 정도가 불량할수록, 학업의 안정성이 불량할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보호관찰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태도가 불량할수록, 공범의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집행

유예 전력이 많을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관련 문제행동 지표를 예측하여 주는 변수들은 청소년들의 재범예측 변수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특이할만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한 법령별로 보자면 사회보호법과 성폭력법 위반이 재범관련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출소자들이 문제 소지가 현저하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보였다.

둘째, 공범의 수에 있어서는 청소년에서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경우에서보다 1에서 4명 정도일 때 재범관련 문제를 더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범의 수가 무작정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공범들이 포함된 조직의 해제모니가 무엇인가가 재범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초범 연령은 청소년에서와 달리 성인의 경우 재범관련 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였는데, 초범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과의 횟수나 동종 전과의 횟수는 재범관련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구금된 경력, 횟수 등을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이는 전과의 단순한 횟수보다는 그것이 구금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전과였는지가 중요한 예측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년과 달리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횟수는 성인들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아닌 듯하나 보호관찰 횟수는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들에게 있어 교육연한이나 중퇴의 경험은 재범관련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중졸 이하의 학력은 재범에 유의

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섯째,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면 생업에 대한 태도나 안정도가 재범 발생에 주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생업이 불안정하고 생업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일곱째, 성인들에게 있어 가족결손은 의미 있는 변수가 못되었으나 누구라도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재범예방에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역동적 위험요인이었던 본범에 대한 책임감이나 처분에 대한 수용 정도는 소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인에게 있어서도 재범 발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호관찰소 신고 여부와 신고서의 작성태도 등은 재범관련 문제를 예측하는 데에 별로 유의한 의미가 없었으나 보호관찰관과의 면담 시 답변의 태도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은 오히려 계속 피평가 대상자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소년이나 성인에게 있어 모두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었으며 신고사항 일치도 여부는 청소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거와 직업에 대한 답변의 일치성이 떨어질수록 재범관련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들의 재범지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준 변수들은 청소년대상자들과는 달리 보호관찰 전력, 처분의 근거 법령, 신고사항 중 직업/신분의 일치 여부, 신고기일 내 신고 여부, 생업에 대한 태도, 가정의 결손 정도, 처분의 종류 및 신고서 작성의 충실도였다. 즉, 보호관찰 전력이 많을수록, 신고사항 중 직업/신분사항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생업에 대한 태도가 불량할수록, 재범지수가 높았다. 그리고 처분의

근거법령 및 처분의 종류에 따라 재범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청소년대상자들에 있어서는 책임수용 정도가 가장 설명량이 컸으나, 성인대상자들은 보호관찰전력이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였다.

소년과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현재 조사된 사항들 중에서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유효할 수 있는 변수들은 꽤 많이 탐색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생업이나 가족, 학업 혹은 역동적 위험요인, 그리고 신고사항의 왜곡경향 등은 범죄관련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 상당히 유용한 재범예측치들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행수법에 대한 지식이나 범죄와 관련된 보다 역동적인 행동습관들이 더 깊게 조사될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한 위험예측 지표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앞에서 명시하였다 시피 재범을 관찰하는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았다는 점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지표를 탐색해내기 위해서는 추후 계속적인 관찰이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광배 (2001).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이수정, 김경옥 (2004). 유영철에 관한 몇 가지 의문, *한국법심리학회 2004년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51-70.

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분류처우론*. 동현출판사.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Dawes, R. M., Faust, D., & Meehl, P. E. (1989). Clinical versus actuarial judgment. *Science*, 243, 1668-1674.

Dawes, R. M., Faust, D., & Meehl, P. E. (1993). Statistical prediction versus clinical prediction: Improving what works. In G. Keren, & C. Lewis (Eds.), *A handbook for data analysis in the behavioral sciences: Methodological issues* (pp.351?6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Gendreau, P., & Ross, R. (1987). Revivification of rehabilitation: Evidence from the 1980s. *Justice Quarterly*, 4, 349-409.

Grann, M., Belfrage, H., & Tengstrom, A. (2000). Actuarial assessment of risk for violence: Predictive validity of the VRAG and historical part of the HCR-20.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97-114.

Grove, W. G., Zald, D. H., Lebow, B., Snitz, B., & Nelson, C. (2000). Clinical versus statistical predic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12, 19-30.

Grove, W. M., & Meehl, P. E. (1996). Comparative efficiency of informal (subjective, impressionistic) and formal (mechanical, algorithmic) prediction procedures: The clinical-statistical controversy.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2, 293-323.

Hoffman, P. (1994). Twenty years of operational use of a risk prediction instrument: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s salient factor sco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477-494.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Monahan, J. (1984). The prediction of violent behavior: Toward a second generation of theory and polic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10-15.

Monahan, J. (1993). Limiting therapist exposure to Tarasoff liability: Guidelines for risk containment. *American Psychologist*, 48, 242-250.

Monahan, J. (1996). Violence prediction: The past twenty and the next twenty yea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07-120.

Van Voorhis, P., Braswell, M., &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and Rehabilitation* 4th ed. OH: Anderson.
<http://www.csom.org/pubs/recidsexof.html>
<http://www.csom.org/pubs/recidsexof.html>

1 차원고접수 : 2005. 3. 26.
수정원고접수 : 2005. 6. 5.
최종게재결정 : 2005. 6. 10.



A Preliminary Study to Develop a System for Probation Case Classification

Soo Jung Lee Min-Sik Lee Young-Oh Hong Yang-Gon Kim
Kyongg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Crimi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tent risk factors at probation on the in-take case interview. Besides static risk factors dynamic risk factors were included in order to find out more effective predictors of recidivism. 642 probationers were participated from Y and C probational offices. Among them, 300 juveniles and 342 adults were included. For juvenile probationers, recidivism-related behavior was related to the types of measures and dispositions, number of accomplice, same kinds of crime, previous fine, previous probation, presence of criminal records, years of education, attitude on education, family to live with, family breakdown, parent's attitude on child-rearing, relationship with parent, admitting responsibility of current crime, attitude on intake interview and completeness of registration forms, and accordance of contents on registration forms. Prediction of recidivism-related behaviors for adult probationers had similar patterns to juveniles' but there were some dissimilarities. For adults, violation of Society Protection Law and early onset of delinquency were relatively more effective predictors to predict recidivism-related behavior compared to other risk factors. Also employment and job attitudes were effective predictors for predicting adults' recidivism.

Key words : probation, recidivism prediction, risk assessment, dynamic risk factor